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41
----------	------

제출년월일 : 15.5.7.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불편 및 연료비 부담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 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안 제4조)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 협의

다.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6조)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희망자 중 다음 사항을 만족 하는 지역의 수요자
 -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사용 승락을 얻을 수 있는 지역
-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

라. 보조금의 지원규모(안 제7조)

- 수요가(세대) :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 지원
 - ⇒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지원
- 사업자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설치비 지원

마. 보조대상 선정절차(안 제8조)

- 공급희망지역의 대표자가 신청자들 연명부를 받아 신청서 제출
- 대상사업 적정성, 사업자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사업 선정
-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지역
 - 도시가스 공급희망 세대수가 많은 지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결과 : 불임

-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조례 제정 계획(안) 1부.
- 입법예고 결과보고 1부.
-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1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취약지역"이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개발제한구역
 -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
 -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8. "대표자"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신청자 중 대표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 ②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을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100미터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

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의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신청자 또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3.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녹색에너지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에너지과장 박 양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에너지자원계장 백 현 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 윤 병 (행정 2840)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① 단위 사업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현 주 소	(전화 :)		
⑤ 세대 수				
⑥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로(동)	번길
	공사종점 :	로(동)	번길
⑦ 배관연장	M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한국어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1부.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1부.
------	--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령부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및 상호			
	신청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사명 (단위사업명)				
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단독 주택용 : 세대
				그 밖의 세대 :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액	금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 투자비 : • 주민부담 : • 보조금 :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도면 1부.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

	상 호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사업내용	공급배관			
	도로포장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취사·난방용 : 세대
				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계좌번호 (은행명)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완료 증명서류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3.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사업자만 해당됩니다) 4. 통장사본 1부.
------	---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41
----------	------

제안년월일 : 2015. 7. 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불명확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취약지역’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명 및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음.
- 안산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안의 개별 지원조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지원되도록 함.
-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안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안 조례 제명)
- “취약지역”에 대한 정의 및 기타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 (원안 제2조제4호, 제7호, 제8호 삭제)
- 원안 제4조를 삭제함. (원안 제4조 삭제)
-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50퍼센트 이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로 수정함. (수정안 제6조제1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명 중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으로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을 “지역에” 로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6호를 각각 제4호 및 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원안의 제5조) 중 “시장”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원안의 제6조) 제목 “(지원대상 등)” 을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취약지역” 을 “지역” 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원안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을 “제5조제1항” 으로, “50퍼센트 이내에서” 를 “전액 또는 일부를” 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 을 “제5조제2항” 으로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원안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한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선정된 보조금 신청자 또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제13조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① 단위 사업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현 주 소	(전화 :)		
	⑤ 세대주			
⑥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로(동)	번길	
⑦ 배관연장	공사종점 :	로(동)	번길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1부. 2. 사용지 토지사용승낙서 1부.				

수정안

1.~3.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9조 ~ 제12조

(원안 제10조~제13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원 안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및 상호				
	신청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사명 (단위사업명)					
배관제설치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 일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단독 주택용 : 그 밖의 세대 :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액	금	원		
	사업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 투자비 : • 주민부담 : • 보조금 :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 |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노면 1부. |

수 정 앙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및 상호				
	신청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사명 (단위사업명)					
배관제설치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 일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단독 주택용 : 그 밖의 세대 :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액	금	원		
	사업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 투자비 : • 주민부담 : • 보조금 :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 |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노면 1부. |

원 안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사명					
사업내용	공급배관				
	도로포장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취사·난방용 : 업무·영업용 :	세대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계좌번호 (은행명)					
<p>「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p>안산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완료 증명서류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3.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사업자만 해당됩니다) 4. 통장사본 1부.</p>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사명					
사업내용	공급배관				
	도로포장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취사·난방용 : 업무·영업용 :	세대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계좌번호 (은행명)					
<p>「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p>안산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완료 증명서류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3.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사업자만 해당됩니다) 4. 통장사본 1부.</p>					